

울산 중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(안)

| | |
|----------|------|
| 의안 번호 | 1919 |
|----------|------|

제출연월일: 2022. 3. 8.

제출자: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
1. 제안이유

-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탁체를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시설운영으로 보육사업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 하고자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」 제4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근거법규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 기준 등)
- 「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 조례」 제6조(위탁운영)

나. 위탁의 필요성

- 보육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과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
- 영유아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보육서비스 개발 및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경험이 많은 위탁체의 위탁 운영이 필요함.

다. 위탁 대상시설 현황 및 위탁기간

| 시설명 | 소재지 | 규모 | | 정원 | 종사자 | 위탁기간 |
|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| | 부지 | 건물 | | | |
| 에뜰 어린이집 | 종가로 245 에일린의뜰3차아파트 관리동 | 206m ² | 206m ² | 40명 | 9명 | 2022.9.1. ~ 2027.8.31. |

라. 위탁사무의 범위

-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업무 전반
- 그 밖에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

마. 수탁자 선정방법

- 공동주택 내 관리동어린이집으로 10년 무상임대로 재위탁에
준하여 중구보육정책위원회 심사

3. 추진일정

- 수탁기관 모집 접수: 4월
- 중구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선정: 4월
 - ※ 부적격 처리 되었을 경우 위탁절차에 따라 모집공고 후 선정
- 위·수탁 협약 체결: 5월

4. 참고사항

- 근거법규
- 국공립어린이집 시설 현황

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관련 근거법규

□ 영유아보육법

○ 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

제24조(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) ①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>

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이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, 최초 위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. <개정 2008. 1. 17., 2011. 6. 7., 2011. 8. 4., 2018. 12. 11., 2020. 12. 29.>

1.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2.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
3. 「주택법」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·운영한 자

③ 제14조에 따라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주는 이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1. 6. 7.>

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어린이집 위탁 및 위탁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. <개정 2008. 2. 29., 2010. 1. 18., 2011. 6. 7., 2011. 8. 4.>

□ 울산광역시 중구 영유아 보육조례

○ 제6조(위탁운영)

① 공립어린이집은 구청장이 직접 운영함을 원칙으로 하되, 그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운영할 수 있다.

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때에는 법 시행규칙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 제24조의2 별표 8의2의 신청자격을 갖추고 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법인·단체 또는 개인 중에서 제7조에 따라 위탁운영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를 선정한다.

③ 제2항의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.

1. 보육을 전담하는 등록 사회복지법인
2. 보육사업을 하고 있는 등록 비영리법인이나 단체
3. 규칙 제12조제1항의 별표4에 따른 보육관련학과가 설치된 대학
4. 법 제21조 및 영 제21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원장 자격기준에 적합한 사람

○ 제8조(위탁기간)

제8조(위탁기간) ① 공립어린이집의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한다. 다만, 그 기간 중 계약해지 사유에 따라 새로 선정된 수탁자의 계약기간은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② 구청장은 수탁자에 대한 위탁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그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한 차례만 재위탁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.

붙임 2 **에뜰어린이집 현황**

□ 시설개요

- 소재지 : 중구 종가로 245 에일린의 뜰 3차 아파트 관리동
- 시설규모 : 부지 206m², 건물 206m²
- 주요시설 : 보육실, 조리실, 교사실, 원장실, 유희실

□ 세부내용

- 종사자 : 원장 1명, 담임교사 7명, 조리사 1명
- 운영시간 : 주 6일 이상, 연중 계속 운영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
 - *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후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토요일 휴무
 - * 「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」에 따른 공휴일 제외
- 보육시간
 - 기본보육 : 09:00~16:00(7시간)
 - 연장보육 : 16:00~19:30
- 인건비 지원 : 원장 80%, 영아반교사 80%, 유아반 교사30%, 조리사 100%

□ 2022년 예산액 : 485,223천원

- 보육료: 245,064천원
- 보조금: 207,471천원
- 수익자부담금(선택적 보육활동비) 등: 32,688천원

□ 향후계획

- 2022. 4. : 중구보육정책위원회 개최 및 선정
- 2022. 5. : 위·수탁 협약 체결
- 2022. 9. 1.: 어린이집 운영